



보건복지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

1. 관련

- 가.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814호, 2022.7.27.)
- 나. 코로나19 재택치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(보험급여과-3852호, 2022.7.29.)
- 다.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782호, 2022.7.26.)
- 라. 감염 취약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 적용기간 안내(보험급여과-4363호, 2022.8.30.)
- 마.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요양병원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858호, 2022.7.29.)
- 바. 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감염예방·관리 정책가산료 산정방법 안내(보험급여과-3907호, 2022.8.3.)

2.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를 아래와 같이 연장하여 적용하고자 하니,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○ '22.11.30.까지 적용

-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,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(요양, 정신),
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,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형 전화상담관리료*

* (전화상담관리료) AH260, AH261, AH262, AH263, AH264, AH265, AH266, AH267에 한함

○ '22.12.31.까지 적용

- 노인요양시설, 정신(요양·재활)시설, 장애인거주시설 의료 기동전담반 방문료

붙임 :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연장 안내 1부. 끝.

보건복지부장관



수신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의료기관정책과장, 정신건강정책과장, 대한의사협회장, 대한병원협회장, 대한요양병원협회장, 제주특별자치도지사, 세종특별자치시장, 서울특별시시장, 부산광역시시장, 대구광역시시장, 인천광역시시장, 광주광역시시장, 대전광역시시장, 울산광역시시장, 경기도지사, 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, 충청남도지사, 전라북도지사, 전라남도지사, 경상남도지사, 경상북도지사,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,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

주무관 송서현 보건사무관 조영대 보험급여과장 정성훈
전결 2022. 9. 29.

협조자 행정사무관 박소영 보건사무관 배윤영

시행 보험급여과-4853 (2022. 9. 29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보건복지부 / <http://www.mohw.go.kr>

전화번호 044-202-2737 팩스번호 044-202-3934 / shsong98@korea.kr / 대한민국 공개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